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부바 해 드릴게요”

이용 안내서



어부바노인복지센터

○ 인사말

“어부바노인복지센터” 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는 많아지는데 핵가족화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불가능 해 졌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노후의 거처는 선택의 여지없이 요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여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부모님을 고려장 시키는 것이 아닌 더 좋은 효도 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부바노인복지센터**에서는 평생을 자식들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들께 요양원에서 자식들을 대신하여 부모님께 어부바를 평생 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시설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노후에 부모님을 저희 요양원에 맡기신다면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평생어부바 하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부바** 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부바노인복지센터 원장 이교세



■ 요양원 소개

	어부바노인복지센터	설립일	2019.08.01
급여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9명
대표자	이교세	협력의료	은혜병원
홈페이지	theabooba.modoo.at	전화번호	055)232-2397
주 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98-9(98-19)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1,500 원 (1식) , 500원 (1간식)	
	아·미용비	실비	
시설규모	연면적 226.04㎡ , 건축면적 135.76㎡, 대지면적 271㎡		



구 분	침 실	사무실	물리/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시 설	○	○	○	○	○	○	○

■ 종사자 근무체계

직 종	1	2	3
시설의 장	낮 근무(주말휴무), 상시대기		
간호조무사	낮 근무(주말휴무)		
요양보호사 A	근무(24시간)		
요양보호사 B		근무(24시간)	
요양보호사 C			근무(24시간)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본인부담금 안내(2021.01.01 기준)					(단위:원)
구 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원			
		일 반 (20%)	감 경(12%)	감 경(8%)	
		금액	금액	금액	
본인 부담금	1등급	378,300	226,980	151,320	
	2등급	351,060	210,630	140,420	
	3~5등급	323,580	194,140	129,430	
비 급여	식재료비 (간식포함)	(1일:1식1,500*3회=4,500 +1간식500 1일5,000원)			
		150,000	150,000	150,000	
	이미용비(월)				
합 계	1등급	528,300	376,980	301,320	
	2등급	501,060	360,630	290,420	
	3~5등급	473,580	344,140	279,430	

■ 보험 가입

종 류	가입기간	보험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0.08.01.(00:00)~2021.08.01.(00:00)	흥국화재재해보험
화재보험	2020.08.01(16:00)~201.08.01(16:00)	현대해상화재보험
상해보험	2020.10.02.~2021.10.0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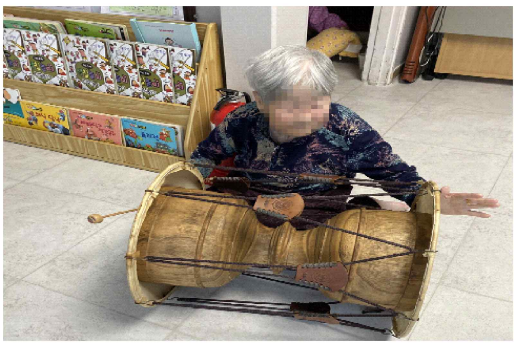
■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1. 기관의 특성

- 1)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 2) 개별 어르신의 **성품, 취미, 취향**을 존중합니다.
- 3) 환자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 섬깁니다.
- 4) 직원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어르신 위주의 서비스**를 지향 합니다.
- 5) **존엄 Care**를 실현 합니다.
- 6) **열린 생활**을 위해 노력 합니다.

2. 우수사례

1) 개인별 취미생활 제공 노력

장구교실	대형 화상 통화
	
콩나물 키우기	원예 교실
	

색칠하기(교재활용)	치매예방
	

3. SWOT분석 (S:강점, O:기회, W:약점, T:위협)



4, 다양한 제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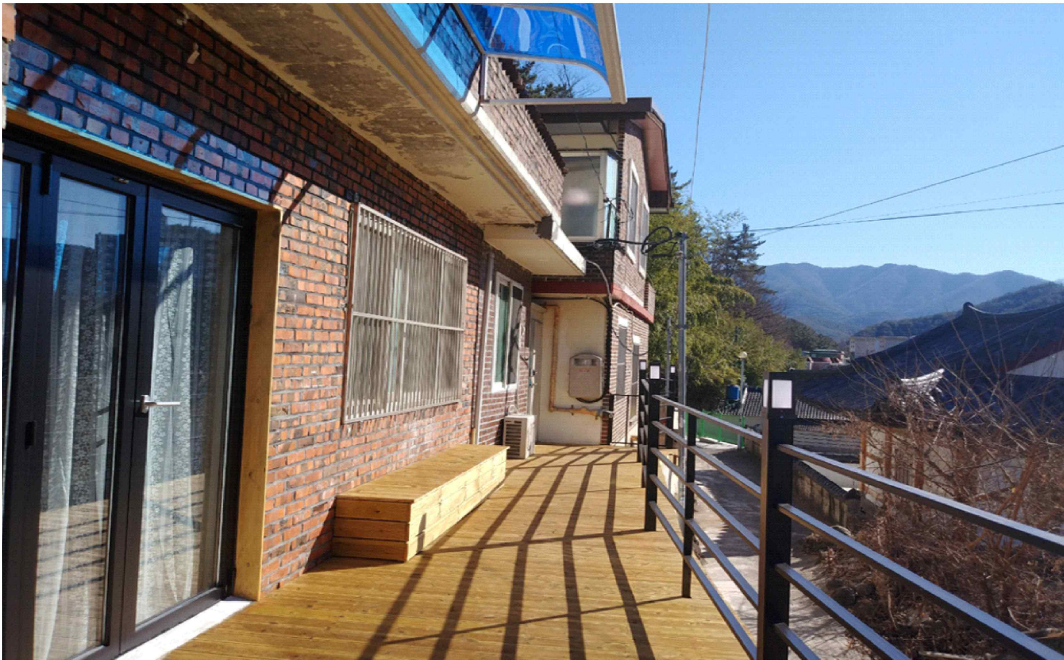
야외 산책로.

변경전



야외 산책로.

변경후(바보의나눔 후원)



- 1) 공동모금회, 바보의나눔, 카카오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등
- 2) 특정한 분야에 숙련된 인력

【 운영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대상자로서 시설 입소대상자를 원칙으로 한다.

3. 모집방법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원시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하고 추천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3. 지인과 입소자 보호자의 입소문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계청 자료 참조 바람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지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의무
-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퇴소 사유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촉탁의사를 통한 진료는 실비로 부담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④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동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공생일 경우 필요에 따라 촉탁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③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